

森林作業論(下)



任慶彬

〈전호에서 계속〉

山内(1957)는 그의 책에 森林作業論이란 말은 쓰지 않고 作業法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38)

- (1) 皆伐天然下種更新法
- (2) 母樹法
- (3) 擇伐用材林作業法
- (4) 皆伐薪炭林作業法
- (5) 擇伐薪炭林作業法
- (6) 中林作業法
- (7) 竹林作業法

일본의 각 대학 임학과 조림학교에서는 14명의 교수가 공동집필했는데(37) 삼림작업법에 대하여 서술하기를 『삼림의 立木構成, 齡級配置, 形狀 등은 성숙임목의 별채방법과新生林分의 보육방법 등에 좌우되며 조림기술상의 삼림취급법을 森林作業으로 말하고 개신을 위한 별채법 즉 更新面의 모양, 크기, 개신기간의 장단, 별채목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森林作業種을 분류할 수 있다』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皆伐更新에 의한 作業種

大面積作業 皆伐作業

小面積作業 帶狀 또는 群狀 皆伐作業

漸伐更新에 의한 作業種

大面積作業, 漸伐作業(또는 傘伐作業)

小面積作業 帶狀 또는 群狀 漸伐作業

擇伐에 의한 作業種

擇伐作業

其他作業種 萌芽林作業(皆伐, 擇伐)

中林作業

필자는 농업계 고등학교용 국정교과서『조림』을 펴낸 일이 있고 이 책은 오랫동안 교과서로 채택된 바 있다(8). 필자는 이 책에 있어서 林分의 모습(교림이냐 왜림이냐), 伐採種(개별, 산별, 택별), 伐區(대면적, 군상, 대상)를 서로組合하여 나타낼 수 있어 그 내용이 무척 복잡해 지지만 주축이 될 수 있는 작업종으로서는 (1) 개별작업, (2) 모수작업 (3) 산별작업 (4) 택별작업 (5) 왜림작업 (6) 중림작업 (7) 죽림작업(특수한 것)의 7가지를 제시했다.

이상으로서 森林作業種의 뜻을 파악해 보았고 그중 주요한 것이 무어냐 하는 것도 살펴보았다.

최근 일본에 있어서는 天然林施業이라든가 複層林施業이라든가 하는 용어를 등장

시키고 있는데(58) 作業法을 自國化하고 그 나름대로의 용어를 적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5. 우리나라 森林作業種의 적용

삼림작업종의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개신벌채방법일 것이다. 즉 개별개신이나 택별개신이냐 하는 것이다. 즉 성숙한 임목이 어떠한 목적으로 벌채되었으며 그뒤 어떠한 수단으로新生林分이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숲의 신구 세대교체란 조림기술상 대단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 朝鮮朝이전

조선조 이전에 어떤 삼림작업종이 적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어색할지 모르나 맹자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數罟不入污地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 材木不可勝用地

뜻은 다음과 같다. 촘촘한 그물을 고기잡이에 쓰지 않는다면 계속 고기를 얻을 수 있다. 산에 있는 나무는 때를 맞추어 굵은 나무만 골라 끊어 쓴다면 어린나무가 계속 자라서 목재의 생산은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林業科學으로 말한다면 擇伐을 함으로써 保續生產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卓見이 아닐수 없다. 孟子란 책에 이미 擇伐作業의 기본원리를 피력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했다.

조선조때의 기록에 나무 천그루를 심어서 成林시킨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고 했으니

이러한 경우는 人工식재와 皆伐作業이 실시된 경우가 아니겠는가. 또 소나무종자, 참나무류의 종자를 뿌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天然更新에 대한 보완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

지난날 莞島지방에 있어서 그곳 소나무숲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松禁事目(소나무 보호 규정)이 만들어진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나무를 大松, 中松, 長來松, 稚松으로 나누고 대송만 골라 벌채 이용하되 장래송, 치송 등을 잘 보호하고 長來松이 中松으로 進界成長(in-growth)하면 그것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일이 잘 진행된 것이라면 그것은 擇伐作業이나 또는 中林作業 또는 保殘木作業등의 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日帝시의 森林作業種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내세운 森林政策이 어찌했는가. 이것을 이곳에 다루기에는 벽차고 삼림작업종에 관련된것만 골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대체적으로 그들이 우리국토를 강점하고 난뒤 美林 또는 좋은나무를 伐採수탈하는데 헐안이 된 느낌이고 更新 즉 森林作業法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세기초의 임업기술은 일본자체에 있어서도 발달하지 못한 형편에 하물며 우리의 森林에 대해서 어려운 森林개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초기부터 각종 森林作業法을 거론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못하고 간에 기록상의 것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① 平熊의 朝鮮森林復命書 (1913), (56)
히라구마란 자는 일본 규슈 熊本大林區署

의 직원으로 한일병합의 다음해인 1911년 여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3개월동안 숲을 조사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안에 森林施業法이 언급되고 있다.

『…… 조선임야의 상태는 이와같고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임업을 保續시킬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정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국유림의 불하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보면 初期研伐案(유치하고 기술적이 아니라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때에 造林예정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하등 정하여진 바가 없다.』

이것은 일본이 시정당초부터 우리나라 목재를 수탈했다는 증좌가 된다. 그는 두건의 시업안의 요령을 평하고 있다.

(가) 평남寧遠郡국유림 가 시업안요령
시업방법

침엽수 : 가문비나무 | 連年擇伐喬林作業
활엽수 : 참나무류

이때 윤벌기는 모두 120년이고 회귀년은 30년으로 하고 있다.

(나)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事業區假施業
案요령 : 作業種

① 참나무류, 박달나무 喬林擇伐作業
輪伐期 100년, 회기년 25년

② 소나무前更作業

윤벌기 80년, 更新期 20년

그는 이 설악산사업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擇伐作業으로 天然更新을 하고자 하는 이계획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하듯이 실행불가능한 작업법의 명칭만 등장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② 國有森林山野及其產物處分에 관한 조사
요령의 건(10).

1911년 당시의 총독부 정무총감은 각 도지사에 위의 통첩을 보냈는데 내용에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그 조사구역이 넓어서 每木調查法 적용이 어려우면 標準地調查法에 의할 것이다.

가. 皆伐을 할때

나. 混淆林에 있어서 어떤수종을 한하여 전부 擇伐하고자 할 때

다. 一定 직경이상의 立木을 전부 擇伐하고자 할때』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日人们은 당시 우리나라 삼림중 쓸만한 재목감의 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벌채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뿐만 아니라 있다. 벌채한 뒤 그 임지에 대한 후속조치의 강구가 없다. 특히 「나항」에 있어서 혼효림중의 어떤 수종을 전부 택벌한다는 것은 삼림작업상의 용어표현이 될 수 없다. 또 「다항」에 있어서도 일정 직경 이상의 나무를 모조리 벌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정당한 作業體系로서의 개별 및 택벌은 될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어떤 영림계획을 세우고나서 이러한 벌채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森林令施行手續(11)

이 훈령도 1911년에 내려진 것인데 제일 장 保安林及 營林監督 제 6 조 제 2 항에 다음과 있다.

『保安林의 벌채는 擇伐作業으로 한다. 保安林의 목적에 해로운것이 아니라면 수종 개량 및 기타 필요목적을 위해서 前更作業 또는 皆伐作業을 할 수 있다.』

또 제 3 항은 다음과 같다.

『보안림 1년간의 벌채재적은 윤벌기를

가지고 一施業區域의 立木全材積을 나눈값 이내로하고 시업의 편의에 따라 隔年作業 을 할 때에는 그값에 격년의 연수를 곱한 積의 값 이내로 한다. 단 擇伐作業을 할 때에는 伐採區域立木總材積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보안림의 윤벌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내의 숫자는 이훈령이 1934년에 개정된바 있는데 개정된 때의 표준연령이다.

교림작업인 때 30년(25년) 이상

왜림작업인 때 15년(10년) 이상

중림작업인 때 上木 30년(25년) 이상

下木 15년(10년) 이상

이러한 삼림작업이 적용될 수 있는 目的 및 學的背景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前更作業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공조림을 수반시킨 개벌작업 또는 모수작업 그리고 산벌작업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朝鮮國有森林未墾地及 森林產物特別處分
條(13)

이것은 1915년의 勅令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國유삼림의 산물의 매각은 다음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업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쟁에 붙일 때

(2) 森林更新에 장해가 있다고 우려될 경우

(3) 그 산물을 조선총독이 정하는 자격소유목재업자에 매각할 때

이때 森林更新이란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내용을 보면 國有林產物을 일인업자에게 넘겨주는 좋은 구실이 마련되고 있는 느낌이다.

⑤ 國有森林伐採制限에 관한 건(14)

이 공문은 정무총감이 1917년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통첩이다. 다음 내용이 있다.

『國有森林山野는 식림보호를 주안으로 하고 森林更新의 가능성에 확실한 외에는 통례 별채하지 않는 것으로하니 신중히 조사한 뒤에 처리하도록 하라.』

여기에도 森林更新이란 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통첩에는 예외항목이 많아서 국유림의 별채가 적당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쓰레기를

줄입니다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물이다